

하남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출연월일 : 2026. 7.

제 출 자 : 하남시장(주택

과)

1. 제안이유

- 현행 「건축물관리법」상 안전 우려가 낮은 건축물 및 이주가 완료된 개발구역 내 건축물에까지 일률적인 규제가 적용되어 경제적·행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. 또한, 버스정류장 옆 등 건축물 철거시 보행자의 안전 우려가 큰 건축물을 허가 대상으로 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해체 신고대상 건축물 추가 신설(안 제8조)

- 1) 동식물관련시설에 해당되는 용도로 1층 이하이며,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
- 2)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내의 해체 대상 건축물 및 인접한 건축물의 이주가 완료된 건축물 중 높이 12미터 미만이고,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(정비구역 외곽경계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은 제외)
- 3)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해체 대상 건축물 및 인접한 건축물의 이주가 완료된 건축물 중 높이 12미터 미만이고,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(구역 외곽경계의 건축은 제외)

나. 해체 신고대상 안전 위험성이 높은 일부 가설건축물 제외(안 제8조)

- 1) 견본주택, 임시숙소,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

다. 해체 허가대상 건축물 신설(안 제8조의2)

- 1) 버스정류장,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등 외벽으로부터 건축높이 접한 경우
- 2) 건축물 높이가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와 접한 경우
- 3) 건축물 높이가 초등학교, 아동관련시설과 접한 경우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해체의 신고 및 허가 대상을 현실화하려는 것으로,
-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사료됨.